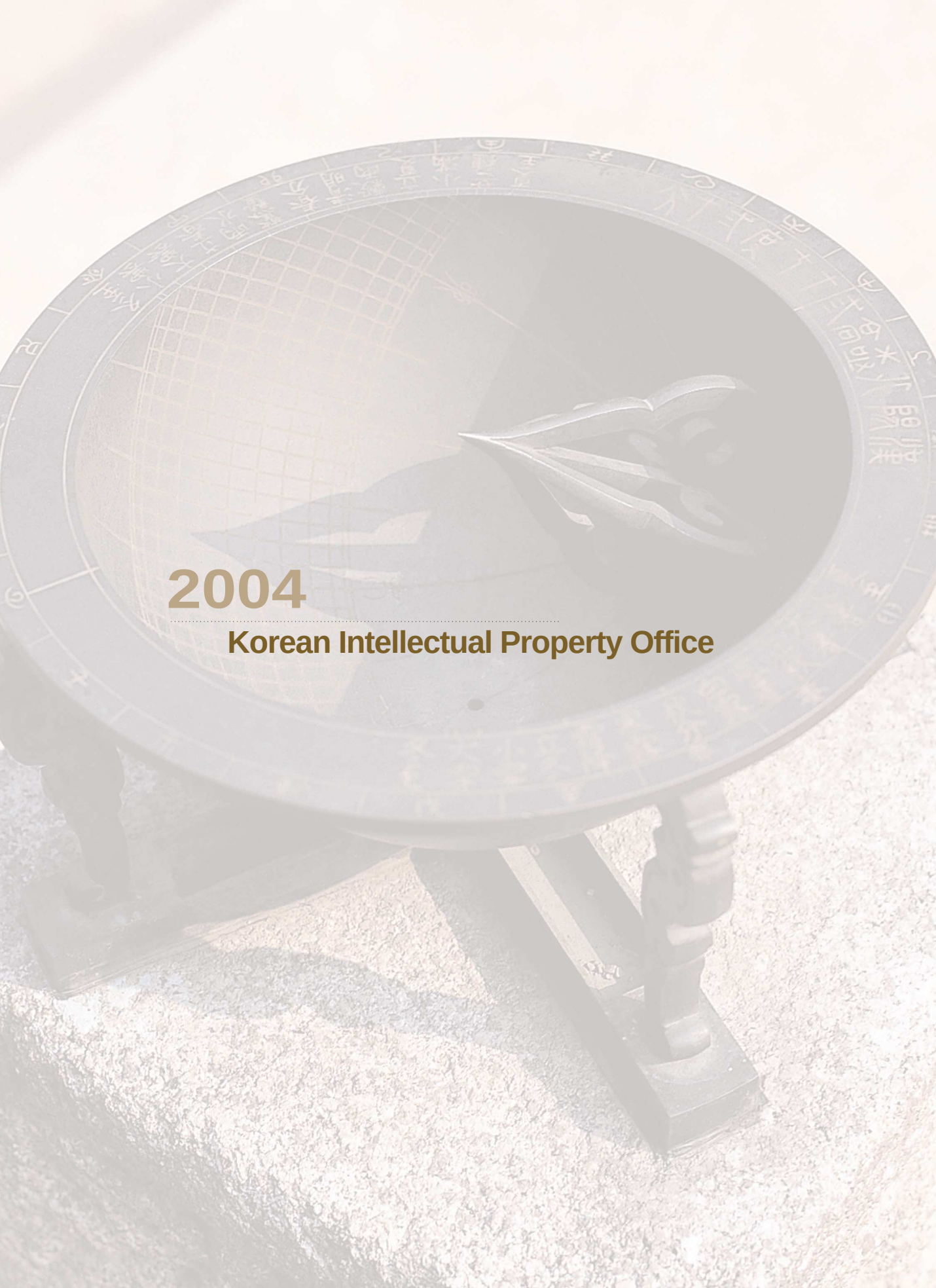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

『21세기 知識財産 強國』을 향한 7대과제 및 40대 실천과제

2004. 2



200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나아가고 명실상부한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의 확충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지만, 핵심원천기술의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 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아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앞당겨 축소하고 경쟁국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못지않게 새로운 기술의 창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과 효율적인 특허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로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권리화된 특허기술이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신기술 개발을 유인하는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특허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행정혁신 과제를 정리하여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본 계획에 제시된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등 7대 정책과제와 40개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견인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4. 2
특허청장 하 동 만

21세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향후 10년은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권의 주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외 경쟁여건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C O N T E N T S

제1부

특허행정의 장기 비전과 전략

I. 우리경제의 좌표	8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환경	10
III.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위상	16
IV. 21세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22

제2부

특허행정 7대 정책과제 실천 계획

I.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32
II. 상표·디자인의 권리 보호기반 강화	37
III.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42
IV.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 확충	46
V.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 확산	52
VI.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의 강화	58
VII. 특허행정 내부혁신 역량의 강화	62





제1부 특허행정의 장기 비전과 전략

- I. 우리경제의 좌표
-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환경
- III.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위상
- IV. 21세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I. 우리경제의 좌표

▶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의 한국경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조립가공형 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대만·싱가폴·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선발 신흥공업국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2002년도에는 GDP기준으로 세계 제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때 금융시장의 불안과 일부 대기업의 부실화로 인하여 '90년대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의 4대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단시일 내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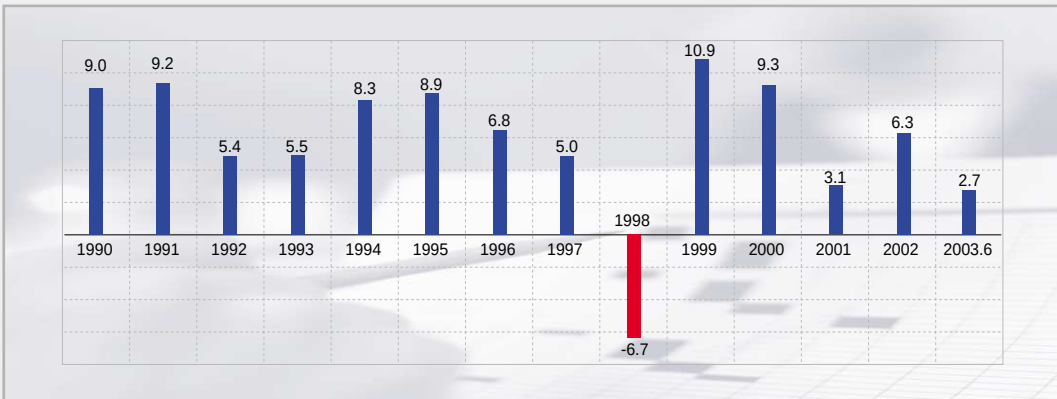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경제상황은 수출의 높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와 소비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세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향후 10년은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권의 주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외 경쟁여건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 주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인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장벽의 확대를 통해 기술의 독점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소위 기술패권주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풍부한 인재들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중이며 최근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등 신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은 물론 기존의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다.

〈그림1〉 한국의 GDP성장률 추이(%)



▶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처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기술이 될 IT·BT·NT 등 미래 전략기술의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함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은 신기술, 디자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극대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창출되며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과 인식의 확산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환경

▶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오늘날의 경제활동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부가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은 에너지나 토지 등 유형자산과는 달리 고갈되는 법이 없으며 활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발휘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처럼 노동과 자본 위주의 투입을 통한 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전통적인 경쟁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제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차별화되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은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촉진하는 기폭제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와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창의와 혁신에서 비롯된 무형의 연구성과물, 즉 창조적 지식과 기술은 권리로써 철저히 보호해야 함은 물론, 권리화된 기술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목하여 산업현장에서 적극 사업화·상품화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하며, 결과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하여 또 다른 신기술을 낳게 하는 이른바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못지 않게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허기술 정보는 연구개발의 주요 인프라로서 기술개발의 추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특허기술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중복 연구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 적극적으로 창출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재투자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조해 내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향상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림2〉 지식재산권(IPR)의 경제적 중요성

① “지식기반경제”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경쟁력과 부(富)의 핵심원천으로 부각

- ▶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허의 실시권 설정으로 거액의 로열티 수입 확보
 - 지난 5년간 미 퀄컴사의 CDMA휴대폰 기술에 대하여 국내기업이 지불한 로열티는 1조원을 상회
- ▶ 신제품 출시와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시장수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원동력
 - 1g당 가격비교 : 금(11\$), 인터페론항암제(5천\$), EPO빈혈치료제(67만\$)

② 지재권 보호시스템은 연쇄적인 기술혁신과 새로운 지식창출의 촉진제로 역할

- ▶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내용을 공개하여 기술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
 - 지식재산의 권리보호가 없을 경우, 경제주체들은 기술혁신·R&D·위험부담을 기피하고 무단복제, 무임승차를 선호하게 되어 경제활동의 창의와 역동성 상실
- ▶ 특허정보는 기술개발 동향의 핵심정보이자 기술정보 예측의 결정체로서 역할
 - 특허정보는 국가의 혁신적 창조활동의 평가지표로서 주요한 “과학기술성숙도지표”로 활용(OECD)
- ▶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유치와 선진기술의 이전 촉진 등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환경 조성
 - 지재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가 위축되며 위조상품이 만연하여 대외신인도가 추락

③ 신기술, 브랜드, 디자인은 권리화를 통해 안정된 사업수행과 자산으로서 활용 가능

- ▶ 아무리 좋은 기술도 특허로 권리화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의 창출이 불투명
- ▶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쟁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전략적 제휴수단으로 활용 가능
 - 경쟁기업간 상호 주변기술에 대하여 특허 교차협상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 절감 및 특허분쟁에의 사전 대응이 가능
- ▶ 디자인과 브랜드 또한 기업의 주요 경영자산으로 대두되어 상표권, 의장권 획득은 필수
 - 영국 Interbrand가 조사한 '02년도 “Coca Cola” 브랜드가치는 696억불에 육박

▶ 전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어 특허출원이 급증

세계 각국은 신기술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이들을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독점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발업체들은 기술사용의 대가로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차세대 성장엔진인 디지털TV와 DVD플레이어의 경우 관련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제품가격의 11.1%와 15.0%를 각각 로열티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표준화된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풀(Patent Pool)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으로 하여금 특허풀에 속해 있는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시장진출을 봉쇄하여 특허의 보유가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치열한 기술경쟁으로 인하여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1960년에 95만건에 불과했던 전 세계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01년에는 1,214만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표1〉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증가추이

	'60년	'92년	'96년	'98년	2001년
출원건수(만건)	95	187	357	823	1,214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규모 또한, '90년 20천건에서 '02년 114천건으로 5.7배가 증가하여 각국의 해외특허 확보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림3〉 전 세계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규모 추이('90~'02)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전세계적으로 통일화



세계경제의 통합화·개방화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의 증가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보호수준이 강화되고 있고 국제적 통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1월 WTO TRIPs가 출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적인 무역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 회원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논의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질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등 신기술분야 지식재산 보호규범의 마련이 활발히 논의중이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이는 양자·다자간 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주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특허중시 정책(Pro-Patent Policy)을 추진하면서 “특허행정 강화방안”을 마련, 산업부문별 기술지원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특허상표청(USPTO)의 인사관리 및 재정의 독자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강화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2002년 6월, 미국 지식재산권정책의 비전을 담은 「21세기 전략계획」(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초안이 발표되어 미국정부와 민간분야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3년 2월 최종수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수정된 「21세기 전략계획」은 변화하는 국내 · 외 지식재산권 환경에 부응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탄력성 확보, 생산성 제고 및 직원 능력함양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심사관 증원, 심사절차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10년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지적재산입국」 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시스템을 지식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발전전략을 추진중이다. 일본이 지향하는 「지적재산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한다는 국가



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물건의 생산’에 더하여 기술·디자인, 브랜드나 음악·영화 등의 콘텐츠라는 ‘정보의 생산’, 즉 무형자산의 창조를 산업의 기반으로 함으로써 일본 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 국가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부터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관료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일본의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본의 지대한 관심은 2002년 6월 제4차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의 발표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50여개 주요 정책이 담겨져 있다. 또한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동년 11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3월 내각(총리실)에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어 범정부적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총리실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 것은 21세기에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 및 산업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위상

▶ 1. 그 동안의 성과

국내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의 양적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특허를 포함한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2003년에 총30만5천건이 출원되어 세계 4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4권 전체 출원규모에서는 중국이 625천건으로 1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상표출원이 37만건에 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신기술 개발과 직접 연관되는 특허·실용신안 부문에서는 일본이 43만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총15만8천건의 규모로 세계 4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2〉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단위 : 건)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특 허	1,846	5,070	25,820	102,010	106,136	117,375
실용신안	6,167	8,558	22,654	37,163	39,193	40,820
의 장	4,522	10,075	18,769	33,841	37,587	37,606
상 표	5,124	13,558	46,826	110,073	107,876	108,912
합 계	17,659	37,261	114,069	283,087	290,792	304,713

*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02년, 천건) : 중국(625), 일본(584), 미국(559), '03년 한국(305), 독일(207)

* 특허·실용신안 출원('02년, 천건) : 일본(430), 미국(332), 중국(173), '03년 한국(158), 독일(87)

지식재산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 이후 각종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한편, 상표법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등 주요 국제조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산업재산권 보호법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그림4〉 우리나라의 WIPO관장 산업재산권 조약 가입현황

가입 조약명칭	WIPO설립 협약	파리협약	PCT협약	미생물기탁 부다페스트 조약	IPC특허 분류조약	NICE상품 분류조약	상표법 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시기	'79.3	'80.5	'84.8	'88.3	'98.10	'99.1	'03.2	'03.4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제정,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마련, 발명공작교실의 전국적인 설치, 중소기업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전개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특허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산업재산권 전자출원율은 2003년 현재 86.5%에 달하여 세계최고 수준이며, 2002년도에는 특허청내 모든 민원처리와 전체업무의 100% 온라인화를 달성하였고, 1억2백만건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1997년 한국특허청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베트남, 필리핀(2002년)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2003년)와 PCT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에 대하여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EPO, 호주 등과 정례적으로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특허심사 결과의 상호 활용을 위한 양자간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등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빠르게 격상되고 있다.

〈표3〉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 및 처리 현황 (2002)

국 가	EPO	미국	일본	스웨덴	호주	한국	중국	러시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국제조사(건)	63,958	25,818	12,770	4,034	2,201	2,296	1,116	641	667	513
국제예비심사(건)	38,237	22,020	4,889	3,359	1,780	1,290	694	388	-	199

▶ 2. 현 상황에 대한 평가

지난 '77년 특허청 개청 이래 25년여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보호, 창출,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꾸준히 정비하여,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활동이 주변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허정보가 국가 전체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 활동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규모에 비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확보가 부진하여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이 절실한 실정이다.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허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열세이며, 2002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료 수입액은 27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기술수출액은 6억달러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기술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5〉 우리나라의 연도별 기술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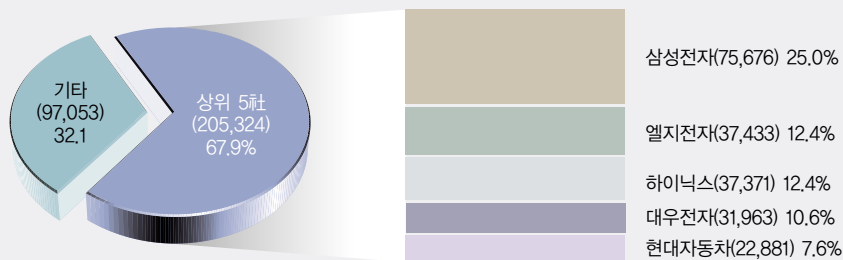
또한 우리의 경우 세계 100대 글로벌 브랜드에 “삼성(Samsung)”이 100억 달러의 브랜드가치로 유일하게 세계 25위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를 대표하는 파워브랜드의 부재로 인하여 세계적인 명품을 바탕으로 하는 부가가치의 창출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표4〉 전세계 브랜드 가치평가 순위(Businessweek, 2003)

순위	브랜드명칭	2003년도 브랜드가치(10억달러)	소속국가
1	COCA-COLA	70.45	미 국
2	MICROSOFT	65.17	미 국
3	IBM	51.77	미 국
4	GE	42.34	미 국
5	INTEL	31.11	미 국
6	NOKIA	29.44	핀란드
:	:	:	:
25	SAMSUNG	10.85	한 국
:	:	:	:

둘째, 지식재산이 창출되는 저변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2~'99년간 기업의 특허출원 총 33만3천건 중 상위 5대 기업의 출원이 20만5천건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획득 활동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유실적은 저조하여 이들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6〉 상위 5대 출원기업의 특허출원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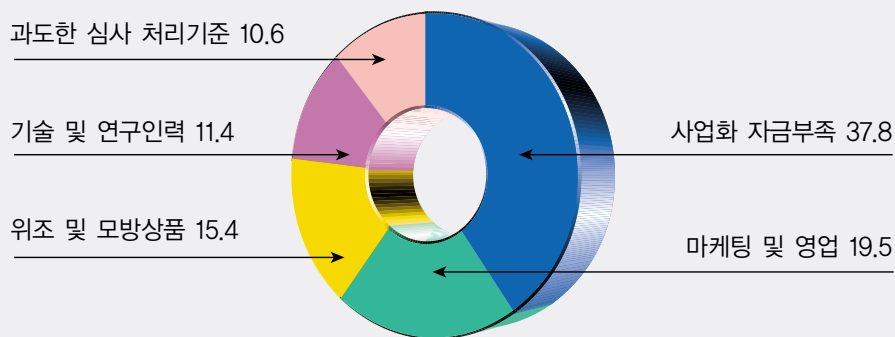


한편 기초·원천기술의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획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2002년도에 총1,495건으로 전체등록건수(85,245건)의 2%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특허경쟁력의 미래에 적신호를 안겨주고 있다. 이는 조직내 개인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조직차원에서의 보상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신기술의 창출과 관리를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특허기술이 국가적으로 충분히 활용되거나 산업계로 적극 연결되어 상품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권리화된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어렵게 획득한 특허 중 상

당수가 사장되어 상품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허권이 사업화되는 비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또한 부동산, 상품과 같은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무체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것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허기술 사업화가 미흡한 것은 사업화 자금 부족, 마케팅 부족 등의 원인 외에도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가치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히며, 이는 결국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7〉 특허기술 사업화가 미흡한 원인(%)



넷째,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신기술개발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지만 특허심사대기기간이 장기화되어 국가 산업기술 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2003년말 기준으로 평균 22.1개월로 독일의 10개월, 미국의 16.7개월보다 지연되고 있다.

〈표5〉 우리나라 특허심사 대기기간 추이 현황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기간(개월)	36	36.9	35.5	28.1	23.6	20.6	21.3	22.6	22.1

이러한 특허심사의 지연은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지체시켜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특허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특허심판의 처리기간도 2003년 기준으로 1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특허관련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안정되게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섯째,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전략수립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표6〉 신지식재산에 대한 소관부서 현황

신지식재산권	관리기관
컴퓨터프로그램(S/W)	특허청, 정보통신부
식물신품종	특허청, 농림부
지리적 표시	특허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전통지식	특허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경쟁력과 부의 핵심원천이자 신제품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수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인 열정과 노력이 꾸준히 발휘되어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실용신안 출원 규모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4위에 이르는 등 기술강국의 외양적 규모는 괄목하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수준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식재산을 적극 관리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 성과물이라는 정도의 주변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관리활동을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적인 활동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에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V. 21세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특허행정의 비전과 전략

〈 비 전 〉

21세기 「知識財産 강국」의 실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산업 및 경제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내는 사회



〈 추 진 원 칙 〉

특허행정 프로
세스를 지속적
으로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특허기술정보의
전략적 활용

범정부적
유관기관
협력강화



〈 7대 정책과제 〉

과제1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과제2	상표·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 강화
과제3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과제4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 확대
과제5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 이용 확산
과제6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의 강화
과제7	특허행정 내부혁신 역량의 강화



▶ 1. 특허행정의 비전

우리나라가 장차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구조개혁, 노사개혁 등 5대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야말로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디지털 TV, 미래형 자동차,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약 등 미래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등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창의에서 비롯된 각종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을 포함하여,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철저히 보호하여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는 시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특허행정이 추구하는 발전 목표는 「21세기 지식재산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재산강국(知識財産強國)」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특허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창출·보호·활용을 바탕으로 산업 및 경제의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내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창의와 혁신이 존중되고 지식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 ▶ 지식재산이 유형자산과 같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사업화 되어 적극 활용되는 사회 ▶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식재산이 골고루 창출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는 미래의 핵심 국가자산이 될 지식재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며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온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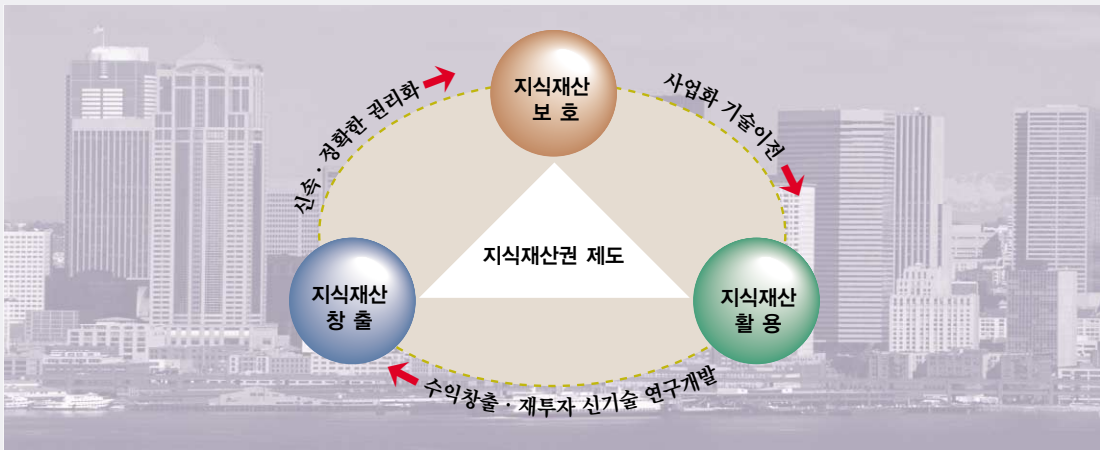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주무관청인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기술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특허행정의 발전전략 : 원칙과 과제

지금까지 우리의 특허행정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통한 보호측면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권리화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거나 기술정보의 집적과 분석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그 활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지식재산의 창출로 유도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국가적으로 부를 창출해내는 산업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적극적인 활용과 재투자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21세기 지식재산강국의 실현을 위한 특허행정의 발전전략은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 재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식재산 창출 사이클의 가속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8〉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사이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특허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 ②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도모한다.
- ③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 ④ 특허정보를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⑤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한다.

이러한 추진원칙에 따라 앞으로 특허행정은 본연의 업무인 산업재산권 심사, 심판 기능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7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특허기술은 신속히 권리화하고 그 보호를 강화한다.

갈수록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안정된 권리의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행정 시스템을 확

충하고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특허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특허심사 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의 유효여부에 대한 관련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상표·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가 소프트화되고 품질이 균일화되면서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대변해 주는 상표와 디자인은 핵심·원천기술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거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부응하는 상표와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상표·디자인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제고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상 상표의 보호,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 등을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 또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가적으로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적극 산업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사업화,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기술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특허기술 거래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산업계에 적극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식재산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충한다.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식재산이 활발히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국내 및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발명인식을 복돋우기 위하여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학생 발명꿈나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여성발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발명인구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는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지식재산에 대한 건전한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및 계몽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을 확산한다.

전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IT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첨단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특허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억건에 달하는 특허기술 정보를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정보 분석과 활용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특허정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고 특허정보 분석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간의 특허정보 제공 관련 산업의 육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행정 정보화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허행정 전산화 국제표준의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특허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분야가 국제 교역질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 시스템의 국제적인 통일화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가 거센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질서의 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극적인 통상의교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WTO, WIPO, APEC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함께,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자간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차질없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특허행정의 내부혁신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수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가지식재산전략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식재산 정책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특허행정 내부적으로는 인사, 교육, 예산 과정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행정은 본질적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이라는 인식하에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7대 핵심과제별로 40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소관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을 목표로 한다. 각 정책과제는 매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또한 과제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유관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허행정이 추구하는 발전목표는 「21세기 지식재산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강국(知識財産強國)」이란 사회전반에 걸쳐 특허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창출·보호·활용을 바탕으로 산업 및 경제의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사회를 의미한다.



제2부 특허행정 7대 정책과제 실천계획

7대 정책과제 및 40대 세부실천과제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1. '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 2.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실용신안 제도의 개선 3. 특허심사의 전문화를 통한 심사품질의 제고 4.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특허제도의 정비 5. 신속하고 적절한 특허심판의 수행
상표·디자인의 권리 보호기반 강화	1. 상표·디자인 권리화 기간의 단축을 위한 심사시스템 개선 2. 상표·디자인 심사의 전문성 강화 3. 상표제도 운용의 선진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4. 인터넷상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를 지식재산권으로 적극 보호 6.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정비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1.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 2. 특허기술의 이전·거래의 활성화 지원 3. 대학이 보유하는 특허권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 촉진 4. 국유특허권 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 촉진 5. 특허기술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지식 재산 창출의 저변 확충	1. 발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 2.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의 확산 3.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권 확보 지원 4. 초·중·고 학생 발명꿈나무 양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5. 여성의 발명활동을 지식재산 창출의 축으로 적극 육성 6. 변리업무의 전문화 및 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 7.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로 건전한 사용질서 확립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 확산	1. 미래지향형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특허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3. 심사정보의 적극 공개 및 참여형 홈페이지 구축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 활용 체계 구축 5. 특허정보서비스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6. 특허정보화를 선도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의 강화	1. 지식재산 多者間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증대 2. 지식재산 분야 兩者間 협력사업을 강화 3. 국제협력 조직의 확충 및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4.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 5.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특허행정 내부혁신 역량의 강화	1. 특허행정 혁신을 가속화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2. 민원행정 기능의 내실화를 통한 고객만족의 극대화 3. 범정부적 국가 지식재산 정책수립 기능의 강화 4. 인사·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5. 국제특허연수부를 세계적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발전 6. 특허관리특별회계 예산제도의 개혁 및 수수료체계 개선



I.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1. '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 ■■■

● 그동안 특허행정 전산화 등을 통해 특허심사대기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으나, '0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

- ▶ 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07년에는 특허심사에 2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96	'97	'98	'99	'00	'01	'02	'03
심사대기기간(개월)	36.9	35.5	28.1	23.6	20.6	21.3	22.6	22.1

※ 주요국 심사대기기간 (2002년) : 독일 (10개월), 미국 (16.7개월), 일본 (24개월)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행정 시스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 ▶ 심사 前단계인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효율적으로 수행
- ▶ 특허검색 전산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KIPOnet II” 개발을 '05년까지 완료하여 심사의 생산성 제고
- ▶ 출원인 스스로 선행기술을 조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시 선행기술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 심사대기기간 지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 심사인력의 연차적 증원을 추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

- ▶ '04~'07년 동안 총 500명의 이공계 특허심사 인력 증원을 추진
 - ※ 증원소요 (명) : ('04) 200 → ('05) 250 → ('06) 55 → ('07) 45
- ▶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사관 직급 체계 조정



2.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실용신안 제도의 개선

●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첨단기술이나 이미 사업에 착수한 기술 등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

- ▶ 우선심사 대상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우선심사 제도를 활성화
- ▶ 우선심사 신청율을 현재의 3%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최대한 지원

●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특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이의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관행을 개선
 - 특허등록을 결정한 해당 심사관이 처리하고 있는 이의신청업무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리함으로써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
- ▶ 대리인제도·정정청구제도·이중출원제도의 개선, 명세서 기재방법 및 출원인 제출서식 간소화, 특허법령의 용어 순화 등

● 실용신안제도의 개선을 통한 심사의 능률 향상

- ▶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04년까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 ▶ 특허심사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이중적 절차 수행에 따르는 심사의 비효율적 측면을 해소하고 특허심사 대기기간의 단축상황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



I.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3. 특허심사의 전문화를 통한 심사품질의 제고



● 심사관이 보다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심사관 1인당 연간심사물량을 '07년까지 200건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1인당 담당 기술분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 ※주요국 1인당 연간 심사물량 (건) : 한국 (320) / EPO (61), 미국 (78), 일본 (197)
 - ※주요국 1인당 담당 기술분류 (개) : 한국 (150) / 미국 (23), EPO (43), 일본 (62)
- ▶ 기술분야별로 선행기술 전담조사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관과 조사원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선행기술조사 품질수준을 제고('04)

● 심사기준의 정비 및 심사관 직무교육의 강화

- ▶ 법령개정, 판례동향, 전산개발 등 심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꾸준히 정비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관 교육을 강화
- ▶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 및 연수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심사관의 신기술 분야 심사역량을 강화

● 첨단기술분야 심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특허 심사조직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적극 활용

- ▶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종합심사국의 신설 추진
- ▶ IT, BT, NT 등 신기술분야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신기술분야 외부 전문가를 심사과정에 적극 활용

● 공정하고 효과적인 심사평가제도의 정착 및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

- ▶ 평가요소의 세분화, 평가결과의 명확화, 평가후 심사관의 이의수용절차 등의 반영을 위하여 심사평가 규정 및 지침을 정비
- ▶ 심사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요구사항을 심사과정에 반영



4.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특허제도의 정비



● 특허법조약 (PLT) 가입과 특허실체법조약 수립에 적극 대처

- ▶ 출원일 설정 요건을 국제적 기준으로 완화하고 출원인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방지하는 등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목표로 국내제도를 정비
- ▶ 특허요건, 청구범위 등 특허제도 실체적 사항의 통일화를 위해 WIPO에서 논의중인 특허실체법조약 수립과정에 적극 대응

● WIPO의 PCT 제도개혁 동향에 맞추어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

-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품질표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의하여 PCT 심사품질을 향상('04)
- ▶ PCT 관련제도 및 행정업무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가칭 '국제출원과')를 신설하여 제도개혁에 효과적으로 대처

●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의 적극적 보호방안 강구

- ▶ 전통지식 관련 비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내 전통지식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국내 전통지식 DB를 구축
- ▶ '05년까지 전통지식에 관한 각국의 보호제도 및 법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전통지식 보호방안을 수립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협력 시스템 구축 ('07)

- ▶ 양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심사 결과를 상호활용하여 동일한 출원에 대하여 국가간 효율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수행
- ▶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I.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5. 신속하고 적절한 특허심판의 수행



●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07년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 분쟁에서의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

- ▶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07년까지 24명의 심판관 인력증원 추진
- ▶ 법원의 침해소송 관련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여 특허심판원의 특허분쟁 1심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및 관행의 개선

- ▶ 가급적 모든 증거의 제출이 심판청구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심판청구이유변경 금지 및 특허법원 소송단계에서의 심리제한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04)
- ▶ 직권심리, 구술심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심리의 축진을 도모

● 특허심판의 전문화를 통하여 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

- ▶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1인당 심판처리 물량을 '07년까지 70건으로 적정화하여 충실한 심판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 심판관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법연수원 등 전문법률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방안을 강구
- ▶ 심판관 임용시 실질적인 심사경력의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심리관이나 특허조사관의 근무경험이 심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심판관 인사제도를 개선



II. 상표·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 강화

1. 상표·디자인 권리화 기간의 단축을 위한 심사시스템 개선

● 심사 대기기간을 '07년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

-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07년까지 70여명의 상표·의장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
- ▶ 상표와 디자인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를 단계적으로 적정화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
※상표: ('03) 2,700건 → ('07) 1,800건, 디자인: ('03) 2,700건 → ('07) 1,500건
- ▶ '03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상표조사 아웃소싱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아웃소싱 대상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 심사사무처리의 효율화 및 전산 검색시스템의 개선

- ▶ 심사단계별 처리절차의 간소화·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관계사무 취급규정을 '05년까지 정비
- ▶ 상표검색시 검색어를 자동생성하여 유사상표를 검색하게 하는 지능형 상표검색시스템을 개발·운영('04)

● 상표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 출원중인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되는 등 상표의 권리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당해 상표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우선상표심사제도의 도입방안 마련('07)
- ▶ 상표의 등록여부는 직권심사만으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은 상표등록 후에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부여 도모('07)



Ⅱ. 상표 · 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 강화



2. 상표 · 디자인 심사의 전문성 강화



● 심사지침의 구체화를 통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

- ▶ '05년까지 심사처리 절차적 사항과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포함한 상표심사 편람을 제정
- ▶ '06년까지, 상품분류별(유사군별)로 전문적인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

● 상품분류 체계의 일관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

- ▶ '04년부터 일관성이 결여된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
- ▶ 신종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분류지침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시 상품분류체계에 반영
- ▶ 국제분류(NICE분류)와의 조화를 위해 포괄명칭제도의 도입과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06년까지 국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

● 디자인 심사참증 자료의 확충

- ▶ 외부용역을 통하여 외국디자인 및 국내실용신안공보, 인터넷 공지사항, 상품 카탈로그 등 참증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
- ▶ 일본 등 주요국과 디자인 참증자료를 교환하여 심사에 적극 활용

● 심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 ▶ '04년부터 신규심사관 교육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 ▶ '06년부터는 신규심사관 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경과시 심판관 과정, 소송수행자 과정 등 심화교육과정 이수의 의무화를 추진



3. 상표제도 운용의 선진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 WIPO에서 논의중인 상표법조약(TLT)의 개정작업에 대비하여 국내 상표 제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비

- ▶ 서류제출기간 연장제도의 개선과 권리회복 제도의 도입 등 상표법조약 (TLT) 개정에 따른 국내 상표법령의 정비
- ▶ WIPO에서 추진예정인 상표의 부등록 사유, 무효·취소사유 등 실체적 사항에 대한 국제상표규범 수립과정에 적극 대처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안정적 심사체제의 구축

-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상표등록제도의 국내실시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및 서식상의 문제점을 개선('04)
- ▶ 업종별·지역별 단체 설명회를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유용성을 적극 설명하고 동 제도이용의 활성화를 유도('04)
- ▶ 마드리드 의정서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심사조직을 마련하여 국제상표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상표법 체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상표법 전면 개정을 추진

-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법조문별 체계의 정비 및 특허법 준용규정의 삭제등을 통해 법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
- ▶ 상표출원 전에 제3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당해 상표를 사용한 제3자에 대하여 상표사용권을 인정하는 '선사용권' 제도의 도입 추진 등 상표법제상 사용주의적 요소를 강화

Ⅱ. 상표·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 강화



4. 인터넷상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 수립

- ▶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한 목적하에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 ▶ 한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와 사이버스쿼팅 사전예방책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 인터넷상 상표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상표법 정비

- ▶ 링크(Link), 프레임(framing), 메타태그(meta-tag) 등 인터넷 기술과 관련되는 새로운 상표분쟁 유형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 인터넷상 상표사용에 대해서도 기존의 상표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



5.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를 지식재산권으로 적극 보호

● 상품의 지역적 연관성을 판단하여 지리적표시를 생산자단체 등이 단체표장으로 등록하게 하고,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의 구성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04년중 법개정완료)

●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조치를 병행 추진

- ▶ WTO의 「지리적표시 보호·등록 다자시스템」설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외 지리적 표시를 수집하여 DB 구축('04)
- ▶ 무역위원회 및 국세청 관할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조치 등 타 법률에 의한 지리적표시 보호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정기적으로 통지
- ▶ 지역특산품, 전통문화상품의 적극적인 권리화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 대한 지자체 홍보 및 순회설명회 실시



6.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정비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디자인 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보호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 ▶ [의장]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일반국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자출판 시대의 도래 및 출판문화의 고급화에 부응하여 인쇄용 글자꼴(Typographic Typefaces)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의장법 개정을 '04년까지 완료
- ▶ 아이콘(Icon), 휴대전화기 메뉴화면 등 화상디자인의 심사를 위한 참증자료 DB를 구축하고 화상디자인 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 유도
- ▶ 의장법이 디자인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

● 일본 등 외국의 디자인분류 사례 및 국제적인 변화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국내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05)

- ▶ 신종물품, 복합기능 물품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물품을 디자인 분류체계에 편입
- ▶ 디자인 물품분류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분류와 국제분류간의 조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디자인 분야 국제조약의 가입 확대

- ▶ 디자인 물품분류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산업디자인 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의 가입을 검토
- ▶ 국내 디자인 보호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신헤이그 협정 가입을 검토



Ⅲ.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1.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

● 정부부처간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협력 강화 및 재원 확대

- ▶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참여기관을 범정부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
- ▶ 기술개발 자금, 창업자금, 사업화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 특허기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민·관 합동의 특허사업화 투자조합을 확대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기술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각종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허기술 평가, 특허기술 거래,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사업단계별 연계를 강화
-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사업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성공사례는 적극 발굴·홍보하여 특허기술 성공사례의 보급을 확산

● 우수 특허제품의 대국민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 우수발명품 박람회, 특허기술대전 등 유통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04년까지 특허제품 사이버 쇼핑몰(e-Market Place)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제품 판로개척을 지원
- ▶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등 언론매체, TV홈쇼핑 등과 협력하여 우수 특허제품을 발굴하여 판매홍보 활동을 지원



2. 특허기술의 이전 · 거래의 활성화 지원



● 특허기술 거래장터의 활성화 추진

- ▶ 특허기술상설장터(off-line)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래희망 기술DB를 지속적으로 확충
- ▶ '04년부터 기술이전 수행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이전희망 기술정보를 표준화하여, 개별 기관별로 구축 · 운영하고 있는 특허기술거래 정보의 연계 · 공유 강화

● '05년부터 전략적 특허기술 거래방안을 추진

- ▶ 기술거래의 중점을 '단일 특허권의 거래'에서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인 '제품단위 특허권'으로 군집화(clustering)하여 기술거래를 촉진
- ▶ 동일 기술분야에 속하는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특허업무 대행기관에 공동 관리(pooling)하도록 하여 크로스라이센싱, 제3자에 의한 특허사용계약 등 전략적 연계 지원

●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의 구축

- ▶ 벤처기업확인, 기술거래, 코스닥등록, 융자담보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특허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하여 보급
 - 업종별 기술의 수명지수 및 업종별 할인율 지수를 개발, DB화하여 보급 활용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지원
- ▶ 기술평가인력에 대한 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특허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





Ⅲ.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3. 대학이 보유하는 특허권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 촉진

● 대학보유 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활성화

- ▶ 대학이 보유하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융자지원
- ▶ 정기적인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대학의 특허기술 이전을 촉진

●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 지원 ('05)

- ▶ 대학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지원을 위하여 특허관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급
- ▶ 국공립 대학이 보유 또는 출원중인 특허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담조직이 보유하는 특허기술평가에 따르는 평가수수료를 지원

4. 국유특허권 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 촉진

● 국유특허의 활용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법의 모색

- ▶ 주요 외국의 국유특허 관리현황 조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04)
- ▶ 특허사업화 전문기관에 국유특허권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기술개발기관(승계청)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등 국유특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

●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책 강구

- ▶ 국유특허권 실시권 계약을 활성화하고, 실시에 따른 발명자 보상의 확대 등으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
- ▶ 국유특허권을 이전받은 민간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을 추진

5. 특허기술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특허권 기부제도 활성화 추진

- ▶ 특허기술의 개량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활용되고 있는 특허권 보유자가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에 특허권을 기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고, 수탁기관은 추가 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토록 지원
- ▶ 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시범실시 및 관계기관 협조방안 등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

● 특허기술 부가가치 창출사업 (P&D) 추진 ('05)

-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잠재력 있는 특허기술을 발굴·매입하게 하고 동기술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P&D : Purchase & Development)
- ▶ P&D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술거래 및 사업화 전문기관과 필요자금 조성 등 업무협력 추진

● 특허권 증권화 활성화 방안 강구 ('05)

- ▶ 특허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SPC) 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사업화자금을 확보하고 담보 특허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토록 유도
- ▶ 특허권 증권화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방안을 마련





IV.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 확충



1. 발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

- 기업이나 연구소 대부분의 발명활동은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들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 ▶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을 현행 10~30%에서 3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및 관련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 ▶ 발명자에 대한 보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무발명제도 우수 실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자금지원 방안 등 기업체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강구

●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확산

- ▶ 현재 특허법, 발명진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단일법제로 운영되는 독일의 '직무발명법' 등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단일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04~'06)
- ▶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업체 설명회 실시





2.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의 확산



● 일반인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

- ▶ 국제특허연수부와 유관기관의 연수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재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방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각 지역별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
- ▶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과목 개설을 추진

● 대학의 지식재산권 과정 및 강좌 개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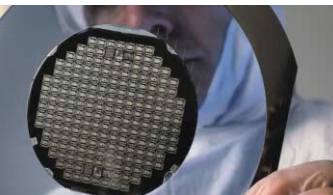
-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재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에 대해서는 지재권 강좌개설을 지원
- ▶ 지역별 특허넷 시범대학을 확대하여 특허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교육실시의 장으로 활용

●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권 교육 기능을 전문화

- ▶ 한국발명진흥회를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04)
- ▶ 사이버 특허대학의 기능을 확충하여 주요 대학과의 학점 상호인정 추진

● 주요거점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에 대한 지식재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

- ▶ 각 지역의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확대하여 특허정보 제공은 물론, 지식재산 창출을 종합적으로 지원



IV.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 확충



3.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권 확보 지원 ■■■

●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설명회 실시

-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자문, 성공사례발표회, 세미나 개최
- ▶ 기술분야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관련분야의 특허정보지원 및 제도설명 기회를 확대

●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특허기술 분석자료의 제공

- ▶ 핵심기술 분야에 대하여 기술개요, 발전동향, 특허분석 및 전망을 정리한 특허기술지도(Patent Map)를 보급
- ▶ 연구개발 착수 전 산업재산권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기술성 정보제공과 함께 특허개발전략 컨설팅을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획득에 수반되는 비용을 경감

- ▶ ‘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0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 ▶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권 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특허출원비용 융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

● 특허법률에 관한 무료상담 및 심판·소송을 대행해 주는 특허법률구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

- ▶ 구조사업에 변리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혜대상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개선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종결시까지 집중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융자 사업 방안을 추진(‘05)



4. 초·중·고 학생 발명꿈나무 양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 초·중·고 학생에 대한 발명·창의력 교육 인프라의 확충

- ▶ 현재 12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발명공작교실을 '06년까지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별 학생발명 교육의 거점으로 운용
- 발명공작교실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발명교육 지도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방안 등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 ▶ 사이버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육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제공
-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발명영재교육 기관을 발굴·지원하고 발명영재육성을 위한 지도교사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04)

● '05년까지 국제특허연수부 부지내에 「지식재산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상설 발명체험교육의 산실로 운영

- ▶ 총 사업비('03~'05) 66억원, 건립규모 1,000평 규모로 건립하여 발명체험실, 발명공작실, 연구자료실 등을 구비
※설계 및 공사착공('03) → 건축공사('04) → 인테리어 및 전시품 설치완료('05)
- ▶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덕연구단지 등 발명교육 유관시설과 연계하여 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 우수 발명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실시

- ▶ 발명대회 입상, 산업재산권 출원실적 등이 우수한 발명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계속 확대
- ▶ 우수 발명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국제발명품 전시회 참가 등 국제교류 지원('06)



IV.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 확충



5. 여성의 발명활동을 지식재산 창출의 축으로 적극 육성

● 여성 발명장려 행사의 개최 및 발명양성사업의 전개

- ▶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여성발명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이 발명 활동에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국제특허연수부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며 다양한 발명정보를 제작하여 보급

● 여성발명가의 사업활동을 적극 지원

- ▶ 여성발명가에 대하여 특허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기업발명품 박람회 개최 등 판로개척을 지원
- ▶ 우수 여성발명인을 발굴하여 국제발명전시회 참가 등 지재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참여를 지원('05)



6. 변리업무의 전문화 및 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

●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방안 강구

- ▶ 학계 · 변리업계 · 변호사 등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 소송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실무능력의 사전 검증장치를 마련

● 변리사 시험제도를 최고의 이공계 자격시험으로 발전

- ▶ 1차 영어과목을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를 위하여 시험과목 및 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05)
- ▶ 변리사시험 주관을 국가 인증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06)
- ▶ 선택과목간 점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변리사시험 2차선택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7.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로 건전한 사용질서 확립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기능을 내실화

- ▶ ‘사이버 지식재산보호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민원을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
- ▶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전문 상담인력, 현장조사원의 보강 등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04)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의 강화

- ▶ 고급기술의 해외유출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 운용을 강화
- ▶ 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영업비밀관리」 표준안 마련 및 홍보

유명한 상품형태를 부당하게 모방하는 행위(dead copy)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체계의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 위조상품 조사·단속업무는 지자체, 검·경에서 전담토록 하고 특허청은 조사공무원 교육, 관련자료의 제공 등 간접지원 형태로 전환
- ▶ 관세청, 검·경 지자체, 관련기업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조상품의 유통과 제조 등을 근절
- ▶ 동영상,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하고 TV, 사이버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V.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 확산

1. 미래지향형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05년까지 차세대 특허넷인 「KIPOnet II」시스템을 구축

- ▶ 온라인 접수 및 통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무중단으로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 위주로 기능 및 처리속도를 개선
- ▶ 서류문서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PCT 업무절차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온라인화
- ▶ 정보시스템의 부하분산 및 장애대비 등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재난 복구 시스템을 구축

●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품질에 대한 관리 강화

- ▶ 특허넷 운영업무 절차의 개선을 위해 특허넷 운영관리지침서 작성
- ▶ 운영위탁 계약시에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인력 투입방안 및 시스템 운영중 단시 손해배상규정 마련 등 비상시 특허넷 시스템의 위탁운영관리 보완책을 마련
- ▶ 특허넷 운영 서비스의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계약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방식의 아웃소싱 계약을 추진
- ▶ WIPO 표준을 참고하여 특허넷 표준을 정비하고, 이를 특허정보 서비스매뉴얼(ISO9001 인증)에 반영





2. 특허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 특허데이터의 품질향상 추진을 통한 신뢰성 제고

- ▶ 특허데이터의 처리 각 단계별로 「데이터 업무 처리지침서」를 작성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하여 데이터 오류발생을 최소화
 〈데이터 처리단계〉
 ① 데이터 생성 및 도입 ② DB구축 ③ 데이터 재가공 ④ 변경 및 오류수정
 ⑤ 보급 및 활용 ⑥ 폐기
- ▶ 데이터 처리 부서간 상시적으로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
 〈데이터 처리 부서〉
 ① 특허청(정보기획관실, 심사 각국, 심판원, 출원과, 등록과 등) ② 특허정보원(데이터관리센터, 문서전자화센터) ③ LG CNS 시스템관리부

● 정보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실시 및 망통합 추진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등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반 노력을 전개
- ▶ DB, 네트워크, 서버 등의 보안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정보보호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안감시 및 대응체제를 24시간 유지



V.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 확산

3. 심사정보의 적극 공개 및 참여형 홈페이지 구축



●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하여 심사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 ▶ 심사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특허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
- ▶ 향후 자동번역시스템과 연계하여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공유에 활용

● 최신 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차별화·고급화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05)

- ▶ 무선 인터넷 (휴대폰, PDA 등) 을 통한 민원처리정보 제공 등 고객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 ▶ 수수료 자동계산, e-Book (전자책) 출판 등 특허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 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배려한 눈높이 서비스 제공

● 참여형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생활화

- ▶ 국민제안, 전자시민포럼 등 사이버 여론창구를 활성화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
- ▶ 실·국 홈페이지, 청내 학습조직·연구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고 자체 의견수렴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국민과의 접점을 다양화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 활용 체계 구축



●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기술수요조사, 연구개발기획, 과제선정·평가 등 전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제도화

- ▶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준비를 적극 유도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특허정보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정보의 환류체계를 구축

- ▶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DB를 구축
-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시 연구개발 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

● 특허지표를 개발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활용

- ▶ 청구항수, 권리존속기간 등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평가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04)
- ▶ 각종 산업분류, 기술분류체계와 연동되는 특허통계를 작성하고 DB를 구축('05~'08)하여 활용
- ▶ 3국(미국, 일본, EU)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예측정보를 생산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량적 지표를 개발('05~'07)





V.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 확산



5. 특허정보서비스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선행기술조사를 활성화하고, 민간 특허정보서비스 시장을 확대

- ▶ 출원인의 선행기술 기재 활성화 및 특허정보활용 제도화에 대비하여 특허 정보 공급기반을 확충
- ▶ 민간서비스업체간 공동협업체 설립을 지원하여 특허정보 활용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04)
- ▶ KPA(특허영문초록)와 중간처리정보 등 공개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민간에 실비로 제공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데이터 재가공을 허용하는 등 정보서비스 상품의 다양화를 유도('04)
- ▶ 선행기술결과의 품질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추진
- ▶ 특허정보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

● 특허정보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허정보원의 역할을 재정립('04~'08)

- ▶ 민간 서비스업체와의 공동협력 방안, 합리적 역할분담 및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실시
- ▶ 신규사업의 발굴, 효율적 조직관리 및 방향 제시 등 특허정보원의 기능을 효율화

● 선행기술조사, PM 작성 등 특허정보 전문인력의 양성

- ▶ 특허정보 분석·활용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검증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 특허정보교육 대상자를 일반인, R&D기획담당, 연구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가간 R&D 전략비교 분석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05)
- ▶ 공과대학, 경영학부, 대학의 기술경영 등 고위직과정에 특허정보 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



6. 특허정보화를 선도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



● WIPO 지재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 WIPO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의 표준 제·개정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 특허넷 표준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여 특허넷과 WIPO시스템간의 호환성을 확보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정보화 기술협력사업을 추진

- ▶ APEC 및 WIPO 등의 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허넷 기술의 해외 전파 및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도모
- ▶ 한·WIPO간 정보화사업 공동추진을 위하여 WIPO에 전산전문가 파견을 확대

●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

- ▶ 일본, 호주, 유럽 특허청 등과 전산전문가 회의를 정례화하여 정보기술 교류를 강화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심사결과 상호교환, 검색시스템 연동 등
- ▶ 한·중·일 특허청간 전산전문가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동의어사전 구축 등 정보화분야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정보화분야 동북아지역 협력체제 강화

● 한국 특허정보의 해외보급을 강화

- ▶ 특허정보의 영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구축
- ▶ 국제특허정보회의의 참여 및 국내 개최 등을 통한 한국 특허정보의 해외홍보 강화



Ⅵ.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의 강화



1. 지식재산 多者間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증대 ■■■

● WIPO주관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수립에 능동적으로 대처

- ▶ 특허법조약, 신헤이그협정 등 WIPO관장 국제조약 가입 확대
- ▶ 특허법상설위(SCP), 상표법상설위(SCT) 등 WIPO가 관장하는 각종 제도 개선 회의에 적극 대응
- ▶ 전통지식, 유전자원, 지리적표시, 민간전승물 보호 등 WIPO내 新지식재산 보호 논의에 적극 대처

● WIPO와의 협력사업을 고도화하여 IP분야 국제적 위상을 제고

- ▶ WIPO에 「Korea Trust Fund」를 조성하여 발명진흥, 인력개발 등에 대한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수행('04)
- ▶ WIPO내 한국 국제분담금의 상향조정과 “B”그룹(선진국그룹) 가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역량을 제고

● WTO / TRIPs 지식재산권 협상에 적극 대응

- ▶ 지리적표시 다자등록 시스템 마련, 생명공학 등 WTO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논의에 적극 대처
- ▶ WTO의제에 대하여 민관합동 포럼을 활성화 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식재산 통상협상 대응체제 강화

● APEC 지재권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 ▶ APEC 지재권 전문가회의(IPEG) 의장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04)
- ▶ 아·태지역 및 중남미 개도국을 대상으로 특허행정 정보화 기술컨설팅을 제공하여 IT분야 APEC 역내 협력을 주도



2. 지식재산 분야 兩者間 협력사업을 강화



● 주요국과의 특허심사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 ▶ 미국, 일본, EPO, 중국, 호주 등 주요국 특허청과의 청장회담을 정례화하여 선행기술 공동조사, 지식재산 정보화분야 등 협력 강화
-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결과 상호 활용체제 기반 구축
- ▶ 심사인프라가 미흡한 동남아, 중남미 국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심사결과의 자동인정을 계속 추진

● 우리나라 특허심사 결과의 국제적 활용 증대

- ▶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PCT 국제조사(ISA) 및 국제예비심사(IPEA) 대행 업무협력 관계를 확대
 - ※ ('02년) 베트남, 필리핀 → ('03년)인도, 인도네시아 → ('04년 이후) 기타 국가
- ▶ 우리나라 특허심사결과의 무심사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특허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
 - ※ ('03년) 말레이시아 → ('04년) 기타 국가로 확대 추진

● 동북아지역의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체계를 심화·발전

- ▶ 한·중·일 3국간 특허청장회담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중심의 블록화 추세에 적극 대처
- ▶ 한·중·일간 공동전문가그룹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및 인정을 위한 기반 조성
- ▶ 한·중·일 지재권 제도의 비교연구 및 통일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화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Ⅵ.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의 강화



3. 국제협력 조직의 확충 및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 지재권분야 국제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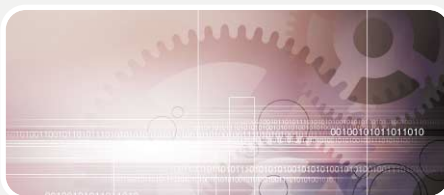
- ▶ 특허청 차장 직속하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다자협력 분야를 전담할 「국제기구담당관」 신설 추진
- ▶ 지재권분야 통상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간 협력사업을 적극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대상국에 해외특허관 파견을 확대
 - ※ 유럽대표부, 제네바대표부, 미국 → 중국, 일본, 동남아, 동구권

● 심사관 해외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 ▶ 미국, EPO, OHIM 등 선진국 특허청에 대한 직무훈련 확대
 - 2주 이내 연수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관 교류연수사업의 기간 및 기회를 확대하여 특허심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
- ▶ 개도국에 심사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심사기법을 전수
- ▶ WIPO 등 다자기구에 특허청 전문가 파견 확대 추진

● 지식재산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분야의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운영
- ▶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국제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유도
- ▶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에 특허청 직원을 파견하여 지재권국제전문가를 양성





4.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



-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침해지역에 대하여 침해실태 및 유통경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제공**
 - ▶ 특허청내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애로 해소 및 해외 지재권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회담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문제를 의제에 반영하여 상대국의 보호노력을 촉구**
 - ▶ 외교부, 산자부, KOTRA 등과 협력하여 정부차원의 지재권 침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 구축

5.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추진



-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
-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대비**
 - ▶ 기 작성된 우리청의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방안”을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
 - ▶ 남북경협 등 남북간 당국자간 회의에 산업재산권 분야가 협력의제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전담추진 창구의 설치 추진**



VII. 특허행정 내부혁신 역량의 강화



1. 특허행정 혁신을 가속화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 특허행정 혁신 강화를 위하여 혁신추진체계의 정비

- ▶ 특허행정 혁신단의 7대 분야별 업무혁신팀 운영을 강화
 - ※ 7대 혁신팀 : ①인사·조직, ②재정·예산, ③행정제도, ④정보화, ⑤발명·산업재산보호, ⑥심사제도, ⑦심판제도
- ▶ 업무혁신 총괄부서인 「인력관리담당관실」을 「혁신담당관실」로 개편하고 혁신담당관실로 혁신관련 기능을 이관·통합
- ▶ 전 직원의 혁신 체질화(혁신 = Change Myself)를 위한 변화관리 전략을 단계별로 수립
 - 〈5단계 변화관리 전략〉
 - ①특허행정의 위기 인식 → ②명확한 비전의 선언 및 변화의지의 공유·확산 → ③의식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 ④혁신성과물의 가시화 → ⑤변화의 제도화
- ▶ 혁신 뉴스레터 배포, 국·실간 1일 교환근무제의 시행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메시지의 전파 및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강화

● 특허행정 혁신과제의 적극적인 발굴 및 정책화 추진

- ▶ 내부적으로 「업무혁신방」을 활성화하여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허행정혁신단 외부자문위원(12명)으로부터 혁신과제 발굴
- ▶ 외부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특허고객 콜센터 만족도 조사, 인터넷 민원, 부패방지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활성화
- ▶ 업무혁신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청 내부 전체적으로 확산



2. 민원행정 기능의 내실화를 통한 고객만족의 극대화



● 민원기능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 ▶ 특허청 종합민원실과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민원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상담원의 전문화를 도모
- ▶ 특허업무 설명회의 수시 개최 및 민원안내용 자료의 지속적 보급

● 차세대 특허넷 (KIPOnet II) 개발과 연계하여 출원, 심사, 등록, 심판의 각 단계별 서류제출 절차의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고객중심으로 개선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

3. 범정부적 국가 지식재산 정책수립 기능의 강화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식재산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 정책총괄·조정기구(가칭“국가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설치 추진 및 관련 법적근거의 마련

● 지식재산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 및 인재 P●●I의 구축

● 한국발명진흥회 소속부서인 「지식재산권연구센터」를 지식재산권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기능 강화



VII. 특허행정 내부혁신 역량의 강화

4. 인사·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직위분류제의 도입으로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인사운영

- ▶ 인사운영을 직급위주가 아닌 업무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적임자의 보임과 장기근무를 보장하여 전문성 제고
- ▶ 심사분야와 지원·정책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경로를 확립하여 순환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기준의 마련과 정착을 통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보장

● 효율적인 심사여건 조성을 위하여 심사팀제 운영의 내실화

- ▶ 심사팀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심사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심사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 심사팀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심사관 직급제도를 개선

● 경력개발과 연계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체제 확립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연수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교육자의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 근무시간 외 어학원, 정보화교육 기관에서의 자기개발 수강에 따르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내 학습조직, 각종 연구회활동을 활성화
-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원격교육 훈련 이수제 실시
- ▶ 대학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을 연계한 다양한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 직무수행 능력 및 조직기여도 비중을 강화

5. 국제특허연수부를 세계적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발전

● 국제특허연수부를 특허청 소속으로 환원 추진

- ▶ 국제특허연수부를 행자부에서 특허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연수 기능 재조정 협의
- ▶ 국제특허연수부 특허청 환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

● 국제특허연수 시설의 현대화 및 연수교육의 내실화 추진

- ▶ 국제특허연수부의 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및 시설 공사 추진 ('04~'07)
- ▶ WIPO등과 협력하여 아·태지역의 중추적 지재권 교육센터로 발전시키고 국제지재권 연수 및 세미나를 적극 유치

6. 특허관리특별회계 예산제도의 개혁 및 수수료체계 개선

● 특허관리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

- ▶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추진
- ▶ '05회계연도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 예탁금을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

● 특허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수료 요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규칙」을 정비

- ▶ 기본료 및 각종 가산료의 부과기준을 체계화하여 수수료 납부에 따르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 출원과 등록은 장려하되 심사청구는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

발 행 처 : 특허청

발 행 인 : 하동만

기 획 :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편집제작 : 지아이컴 02-2273-3041

발 행 일 : 2004년 2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전 화 : 042-481-5288

팩 스 : 042-472-3457

홈페이지 : www.kipo.go.kr



200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